		5	기질환기	다 으	의료비 지	  원 신청서		신규	 기존	<u> </u>	
	성 명					주민등록반					
등 록 대상자	질 환 명							(상빙	명코드 :	)	
	전화번호					휴대폰번:					
						전자메일주소					
	주 소					정보수신여부		□전자메일 □휴대폰 □수신거부 * 의료비지원사업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을 시 정보 제공			
세대주 (보호자)	성 명	주민			l등록번호	5		관계			
	주 소										
	전화번호					휴대폰번:					
환자 가구	환자와의 관계	성명 주민등록번호		주소			H여부 록사유)	취업상태	전화번호		
						( 10	1 1117				
	※ 배우자 관계¹) (□ 법률혼				Ι	□ 사실혼	□ 사실상 이혼)				
부양 의무자 가구	환자와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변	번호	<u>:</u>	주소	가구   원수	소득	재산	전화번호	
	"										
신청자 (환자)계좌	금융기	기관명 예금주				계좌번호					
(271)/11/4	□ 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					 □ 보조기기구입비					
지원대상 신청구분			트흡기 대여로	룬		□ 기침유발기 대여료					
	□ 간병비 □ 저단백 햇반					□ 특수조제분유					
	□ 시단백 옛만 -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 등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및 확 인 및										
유의	하며, 조사를 2회 이상 거부, 방해, 기피할 경우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 (√ 체크)										
사항	원 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										
=1.4	-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확 인										
환수 조치 안내	신성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타 무성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비들 시원받거  (√ 체크)										
본인(대리신청인 포함)은 유의사항과 환수조치 안내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, 위와 같이 희귀질환 자 의료비지원을 신청합니다.											
년 월 일 신청인(대리신청인) 성명 :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
	등록대상자와의 관계 : (대리신청의 경우)										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보건소장) 귀하											

※ 뒷면의 작성 요령을 읽고 작성하십시오.

##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## 희귀질환자 → 접수 → 소득・재산조사 → 검토

→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결정 → 결정사항 통보

- 1. 환자가구에 포함하여야 하는 대상
- 지원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(동거인은 제외)로서,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
  ※ 단,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또는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
  도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
-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
  -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환자가구 가구원의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
  -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환자가구 가구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
  - ※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%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. 30세 미만의 미혼부·모인 경우,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에서 분리
  - 환자가구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
- 2. 부양의무자가구의 범위
- 부양의무자의 범위

작성

요령

구비

서류

- •신청자(환자) 1촌의 직계혈족(부모, 아들•딸 등)
- •신청자(환자)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(며느리 등)
-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되는 자
  - •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  - •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
  -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 2초 이내의 혈족의

## 1. 화자 제출서류

- 1) 임대차계약서, 사용대차확인서 등(해당자에 한함, 임대차계약서는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)
- 2)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(환자를 기준으로 제출)3)
- 3) 신청자(환자)의 통장사본
- 4)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<sup>4)</sup>(신규 신청에 한하여 제출하며 정기재조사 시에는 산정 특례 등록확인으로 갈음)
- ※ 단, 정기재조사 시 산정특례 등록질환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질환이 다를 시에 는 진단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
- 5)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(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, 부양의무자가구 에서도 해당자는 제출)
- 6)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
## 2.부양의무자 제출서류

- 1)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- 2)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- 3)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- 3.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5)
  - 1) 사회보장 자격확인(건강보험, 의료급여)
  - 2) 주민등록등본
  - 3) 소득·재산관계 서류(해당자에 한함)
  - 4) 금융재산관계 서류(해당자에 한함)

<sup>2)</sup>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원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외한 기준은 환자가구 기준 적용

<sup>3)</sup>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할 수 있음. 재혼가정의 경우 부양의무 자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도 추가 제출하여야 함

<sup>4)</sup>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함.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(단, 최종진단이 불가한 질환은 의사소견서 상에 해당 질환에 대한 확진 또는 최종 진단이 불가능한 사유를 소명한 전문의의 소견서 반드시 첨부)

<sup>5)</sup> 보건소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며 보건소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요구할 수 있음